

---

# 협회장 입후보자 안내문

---

(사)대한안경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## 1

### 제21대 협회장 선거 안내

#### □ 등록기간

- 기 간 : 2021년 2월 9일(화) ~ 2021년 2월 15일(월)  
※ 오전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(10일은 12시까지 접수마감)  
(단 토요일, 일요일 및 설연휴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)
- 장 소 : 선거관리위원회(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사무국)

#### □ 선거기탁금 납부 안내

- 금 액 : 3천만원
- 납부계좌 : 우리은행 1005-203-404711(예금주:(사)대한안경사협회)

## 2

### 기호순서 추첨

#### □ 추첨 개요

- 일 시 : 2021년 2월 15일(월) 오후 6시  
(후보 등록 마감 후 추첨진행)
- 장 소 : 선거관리위원회(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사무국)  
※ 후보자 참석 요망

#### □ 대리인 참석

- 후보자 참석이 원칙이나 사정상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히 지참  
(후보자 등록 시 위임장 양식 요청 가능)

### 3

## 선거 홍보 자료 제출

### □ 개요

- 선거방법에 관한 규칙 제4조(선거운동 방법)에 의거 입후보자의 사진과 약력, 선거공약 등을 협회 홈페이지나 시도지부 게시판, 협회 정기간행물(안경계와 KOA타임즈)에 게시 홍보하여야 한다.

### □ 선거 홍보물 자료 제출 안내

- 제출기간 : 2021년 2월 17일(수) 오전 12시까지 필히 제출
  - ※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홍보물 발송 불가
- 제출장소 : 선거관리위원회(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사무국)
- 제출자료
  - ① 선거홍보물
    - A4용지 4매 이내, 양면허용, 270매 제출
    - 사진, 약력, 선거공약 등
  - ② 홍보 동영상 완성본
    - 길이 1분 30초 이내, webmaster@optic.or.kr로 제출

## 4

### 선거(투개표) 참관인 신청

#### □ 개요

-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6조(선거사무 및 진행), 임원선출 시행에 관한 지침 제32조(선거사무)에 의거 후보자는 선거 참관인 3명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선거(개투표) 참관인 신청서 양식은 입후보 등록 시 제공하며, 작성하여 2021년 2월 15일(월)까지 제출 요망
- 참관인 자격 : 선거권자(대의원)

## 5

### 후보자 합동 토론회

#### □ 개요

- 일 시 : 1차 - 2021년 2월 18일(목)  
2차 - 2021년 2월 22일(월)
- 시간 및 장소 : 추후 안내 예정

※ 일정상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, 후보자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및 토론회 횟수, 장소 등 상세사항 결정

## 6

## 선거운동 시 후보자 준수사항

-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(총회일) 전일 밤 12시로 제한한다.
- ②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금품,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.  
상기의 위반사항 발생 시 공직 선거법에 의한 위법 조치는 물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.
- ③ 총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관위의 통제에 절대 따르며 유인물배포, 어깨띠 착용 등을 일체 할 수 없다.
- ④ 선거권이 없는 자(대의원이 아닌 자)는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다.  
(단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허락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.)
- ⑤ 후보자간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상기사항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이나 제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## 7

## 선거운동 시 제한사항

- ① 입후보자의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된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의 호별방문 또는 개인별 접촉을 할 수 없다. 다만,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방문은 가능하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.
-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방송·신문·통신·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·관리하거나 편집·취재·집필·사설·보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언론매체 및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으며, 그 사실이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일 경우 해당 후보는 선거운동 위반사유에 해당한다. 단, 위반사유의 유무는 선관위가 결정한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위원이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직을 박탈한다.